

2026년 「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」 시행계획 공고

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장려하고자 「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6. 6. 17.

경기도지사

1. 신청대상

-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청년 고용 증가율, 청년 근로 여건,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 - 3년 이상 : 공고일 기준 ('23. 6.16.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)
 -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(본사, 지점, 제2공장 등 불문)
- 청년 고용 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
 -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% 이상인 기업
 -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유지율이 25% 이상인 기업

【청년 기준】※ 「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」 상 ‘청년’에 해당하는 출생 연도자

해당연도	청년 기준
2024년도	1985년생(만 39세)~2005년생(만 19세)
2025년도	1986년생(만 39세)~2006년생(만 19세)

【평가 기준】※ 근로복지공단 「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」 기준

- ◆ 평가기간 : '24. 1.1. ~ '25.12.31.
- ◆ '24년도 청년 인원 ㉠ = '24년도 재직한 청년 수(1985년생~2005년생, 동일인 중복제외)
- ◆ '25년도 청년 인원 ㉡ = '25년도 재직한 청년 수(1986년생~2006년생, 동일인 중복제외)
- ◆ 고용증감인원 ㉢ = '25년도㉡ - '24년도㉠
- ◆ 고용증가율(%) = ㉢ ÷ ㉠ × 100
- ◆ 고용유지인원 ㉣ = ㉠ 중 '25.12.31.기준 재직중인 인원
- ◆ 고용유지율(%) ㉤ = ㉣ ÷ ㉠ × 100

2. 신청(선정)제외 대상
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민원 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도박,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
3. 인증기업 지원 내용

- 인증서 및 현판 수여,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
-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가능(최대 2천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)
-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
-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 및 보증료율 인하

「일자리 우수기업과」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」2가지 인증을 받은 후
「일자리 우수기업」인증기간이 경과 한 경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지원은 종료되며
「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」은 「경기도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지원만 가능

4. 신청 및 접수

- 신청 기간 : 2026. 7. 1.(수) 09:00~ 7.14.(화) 16:00까지
- 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(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<http://apply.jobaba.net>)

- 1) 홈페이지(<http://apply.jobaba.net>)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
- 2)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

5. 제출 서류

- 신청서 작성, 출력, 날인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
 - [서식 1] 신규 인증 신청서
 - [서식 2] 신청기업 소개서
 - [서식 3] 청년 근로자 현황자료
 - [서식 4] 기업(개인)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- [서식 5]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- [서식 6] 사업 신청(선정) 제외 비대상 협약서
 - [서식 7]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

○ 증빙서류

- [필수]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
- [필수] 직원현황 근로복지공단 「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 조회」 1부
※ 조회기간 2024. 1. ~ 2025. 12. 설정 후 조회 결과 1부(엑셀 및 PDF변환본)
- [필수] 4대 보험 가입자 명부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※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자료
- [필수] 최근 2년간('24년, '25년) 기업 신용평가 조회서 각 1부
※ 부재 시 '24년, '25년도 기업 내부 재무제표
- [선택] 기타 평가 항목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
※ 사내 규정 및 실제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 서류 등(취업규칙, 단체협약, 사규, 공문, 보고서 등에서 해당 부분 발췌하여 형광펜 또는 밑줄 표시)

6. 심사 및 평가

○ 심사 절차 : 서류 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

(1차) 서류 심사		(2차) 현지 실태조사		(3차) 선정 위원회 평가
제출 서류 및 증빙 기반 정량평가	➔	1차 심사 고득점 기업 대상 노무사 동반 기업방문 조사	➔	1·2차 심사 기반 심의위원 정성평가

○ 평가 및 배점 : 총점 100점(정량평가 70점, 정성평가 30점)

분 야		배점	평가 항목
정량평가 (서류평가)	청년 고용	15점	정규직 중 청년 근로자 비율(5), 청년 고용증가율(5), 청년 고용 유지율(5)
	보상 수준	30점	평균임금(10), 평균임금 상승률(10), 비임금성 경제적 보상 (10)
	근로환경 및 복지	10점	일과 삶의 균형*(4), 자기개발 지원(3), 근로자 복지시설(3)
	지속가능성	15점	기업 안정성 (4), 일자리 창출(11점)
정성평가 (심의위원회 평가)		30점	청년친화 조직문화(20점), 기업 잠재력 (10점)

* 유연(탄력) 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제, 근로시간 단축제, 4.5일제 등), 특별 휴가 지원(특별휴가제, 휴양시설 지원, 리프레시 데이 등), 육아 지원제도(임신·축하 선물 제공, 출산장려금, 양육비 지원 등)

※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에 따라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1회 이상) 총점의 20% 감점

7.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

○ 인증 기간 : 인증일로부터 3년 (인증 연장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)

○ 인증기업은 인증 기간 내, 인증 유지 점검에 대한 협조의무 발생

○ 인증취소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인증 당시보다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<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>

- ▶ 조사 기간 : 매년 2회(상하반기) 실시
- ▶ 조사 내용 : 인증 유효기업 청년 근로자 수 증감 현황 파악
- ▶ 조사 결과 활용
 - (경고) 인증 시점 대비 청년 근로자 수 10% 이상 감소
 - (인증취소) 청년 근로자 수 현황자료를 미제출한 기업

-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그밖에 도지사가 고용 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8. 선정 및 통보

- 선정 : '26년 10월 예정
- 결과 통지 : 최종 선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- 인증서 수여식 : '26년 11월 예정(※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)

9. 기타 사항

-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만 유효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(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)
- 신청서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, 법 위반 문제로 행정적,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
-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 요건 변경, 기업합병, 지역 이전(경기도 외 지역)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각종 증명(빙)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
-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일자리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

문의처

-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☎ 031-8008-8107
-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☎ 031-270-9749, 9758, 9925
- 사업전용메일 goodcorp@GJF.or.kr

